

의안번호	2202855
의 퇴 인	서삼석 의원
회 답 일	2024.10.21.
추 계 번호	24E283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병원선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감면
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병원선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2025년 말까지 부가가치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, 자동차세 등의 간접세를 면제함에 따라 세수는 2025년 8억원 등 총 8억원(연평균 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5년

(단위: 억원)

	2025	누적	연평균
병원선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, 자동차세 면제 신설(안 제106조의2 제1항제3호 신설)	-8	-8	-8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106조의2(농업·임업·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) 제1항제3호	○ 어업인 또는 도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, 자동차세를 면제 - (적용기한) 2025년 12월 31일까지	-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제106조의2(농업·임업·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) 제1항제3호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세수효과는 최근 병원선 석유류 사용량에 세율 및 세전가격을 반영하여 추계하되 최근의 평균 사용량 및 가격 수준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제
- 병원선의 석유류 사용량 자료에는 윤활유 사용분도 포함되어 있으나, 현재 윤활유 가격에 대한 통계가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어 동 추계에는 포함하지 않음
- 개정안의 부칙을 참고하여 세수효과가 2025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2021~2023년 연평균 병원선 운영에 사용된 석유류는 휘발유 4.5천리터, 경유 1,089.8천리터 수준

[표 2] 병원선 운영에 사용된 석유류 현황

(단위: 리터)

유종	2021	2022	2023	연평균
휘발유	4,401	4,205	4,851	4,486
경유	1,066,482	1,003,689	1,199,128	1,089,766
윤활유	5,696	7,719	8,647	7,354

자료: 보건복지부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1~2023년 연평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석유류의 세전가격은 휘발유 1,562원/리터, 경유(선박용) 1,396원/리터 수준

[표 3] 보통휘발유 및 선박용경유 세전가격 현황

(단위: 리터)

유종	2021	2022	2023	연평균
보통 휘발유	1,500	1,650	1,537	1,562
선박용 경유	1,206	1,607	1,375	1,396

주: 윤활유의 경우 별도의 세전가격이 집계되지 않는 상황임

자료: 한국석유공사 펌트로넷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최근 병원선 운영에 따른 석유류 연평균 사용량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율, 연평균 세전가격을 바탕으로, 병원선 석유류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등의 세액이 연간 총 8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

-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액 = 휘발유 및 경유 연평균 사용량
 $\times$ 세율(휘발유 529원/리터, 경유 375원/리터)
- 교육세액 =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액 $\times$ 15%
- 자동차세액(주행분) =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액 $\times$ 26%
- 부가가치세액 = (교통·에너지·환경세액 + 교육세액 + 자동차세액 + 세전가격) $\times$ 10%
 - 세전가격은 연평균 사용량과 연평균 세전가격을 곱하여 산출
 -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전체 부가가치세액의 74.7%, 지방소비세는 25.3%로 계산

[표 4] 병원선 석유류에 대한 세액 추정

(단위: 억원)

유종	교통·에너지·환경세	교육세	자동차세	부가가치세(국세)	지방소비세	합계
휘발유	0.02	0.004	0.01	0.01	0.003	0.04
경유	4	1	1	2	1	8
전체	4	1	1	2	1	8

주: 부가가치세(국세)는 전체 부가가치세액의 74.7%, 지방소비세는 25.3%로 계산함

□ 병원선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2025년 말까지 부가가치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, 자동차세 등의 간접세를 면제함에 따라 세수는 2025년 8억원 등 총 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

- 연간 병원선 석유류 사용량 및 세전가격이 2021~2023년 연평균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병원선에서 사용하는 윤활유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, 세전가격이 집계되지 않고 있어 추계에 반영하지 않음

[표 5] 병원선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시 세수효과: 2025년

(단위: 억원)

	2025	누적	연평균
합계	-8	-8	-8
- 교통·에너지·환경세	-4	-4	-4
- 교육세	-1	-1	-1
- 자동차세	-1	-1	-1
- 부가가치세(국세)	-2	-2	-2
- 지방소비세	-1	-1	-1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